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 93호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문 띄어쓰기 정비
- 상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문 정비
-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운영 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폐지

2. 주요내용

-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3조, 제7조제2항 상위법령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 “농업인 등” → “농업인등”
- 제2조제1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및 조문 정비
- 제14조 식품안전관리위원회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2. ~ 2017. 10. 16.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으로, “농업인 등이”를 “농업인등이”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인 등”을 각각 “농업인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업인 등”을 “농업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인 등의”를 각각 “농업인등의”로 한다.

제5조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업인 등”을 “농업인등”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육성·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p> <p>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p> <p>가. 순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p>	<p>제1조(목적)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 ----- ----- -- <u>농업인등이</u> ----- -----.</p> <p>제2조(정의)----- -----.</p> <p>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p> <p>2. ----- <u>농업인등</u>----- ----- -----.</p> <p>가. ----- <u>농업인등</u>----- -----</p>

현 행	개 정 안
<p>나.·다. (생 략)</p> <p>3. “농업인 사업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을 생산·제조·가공·유통 및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순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가진 <u>농업인</u> 등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농업인</u>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u>농업인</u>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및 <u>농업인</u>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u>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p>	<p>나.·다. (현행과 같음)</p> <p>3. ----- ----- ----- <u>농업인</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농업인</u>----- ----- -----.</p> <p>② ----- <u>농업인</u>의 ----- ----- <u>농업인</u> <u></u>의 -----.</p> <p>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 -----<u>기본계획</u>----- ----- -----.</p>

현행	개정안
<p>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생략)</p> <p>② <u>농업인</u> 등은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u>식품안전 추진계획</u> 자문, <u>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u> 등을 위하여 <u>식품안전관리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u>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표음식위원회가 대행한다.</u></p>	<p>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농업인등</u>----- ----- -----.</p> <p><삭제></p>